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제1호 내지제3호 및 제8호)
 - 전주·수도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지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38퍼센트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산정 기준을 유지함.

4. 참고사항

- 「도로법」 제43조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내지 26조의4 및 별표 2, 3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일부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 전주, 수도권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액제 점용료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와 동일하게 인상(평균 38%)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사실상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 될 경우에는 [별표 3] 조정 산식에 의해 재산정이 되므로 점진적으로 인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별표 3]

점용료조정산식(제26조의4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5/100+(증가율-500/100)×5/1000}]